연구논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례와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장 병 윤*

〈목 차〉

Ⅰ. 서론
Ⅱ. 저작권 분쟁요인
Ⅲ.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례
Ⅳ. 분쟁해결방법
Ⅴ. 요약 및 결론

* 경영학박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주)에프플래닛 대표이사

I. 서 론

대한민국의 IT발전속도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법률적 제도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는 관련된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거래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자상거래와 같이 비대면적, 비서면적, 무형의 상품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거래수단이나 거래관행 그리고 거래규범 등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의사전달매체를 이용한 거래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거래 및 저작권보호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기술적 추이에 맞게 나타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네트워크상에서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배포에 의한 저작권 침해 피해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사건의 분쟁이 다양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확산에 따른 무단복제와 배포 등 저작권 침해 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침해사례와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보호에 대하여 연구하며,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을 연구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은 국내·외의 각종 도서, 연구논문, 저널, 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을 인용,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논문구성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저가권 분쟁요인에 대하여 일반적 논리를 전개하고, 제3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제4장에

서는 저작권 보호방안과 네트워크운영자의 책임에 관하여 분석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분쟁해결방법을 기술적, 법률적으로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5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또한 향후 연구과제를 언급하여 IT관련 저작권 보호의 연구에 기여 하고자 한다.

Ⅱ. 저작권 분쟁요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와 함께 많은 문제점도 주고 있다. 장병윤(2001, 2003)[1]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분쟁을 유발하고 주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자상거래의 대두로 인해 소비자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보안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쟁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저작권 보호이다. 즉 사용자와 저작권자에게 중요시되는 것은 정보보안과 지적재산권 보호이다. 이러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법률로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현대기술발달의 추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개인간 거래의 불법 무료배포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운영자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시스템 운영자의 통제와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는 시스템보안과 법률적 조치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 법률적으로 기술의 발달추이에 이루어 질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여 분쟁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1) 장병윤,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분쟁사례 연구," 중재학회지, 제11권, 2001.
장병윤,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2권 2호, 2003.

이상과 같이 분쟁요인을 방지하고 정보를 보안처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도 암호화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보안프로그램 로직 구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한 분쟁요인과 해결방안을 보면 <표 2-1>에 잘 나타나 있다.

<표 2-1> 분쟁요인과 해결방안

분쟁요인	해결방안
Web, UNIX 및 TCP/IP 프로토콜 등 프로그램 source 유출	정보보호 기술에 의거 문제 해결방법 추구함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및 Web Site 증가로 인한 손쉬운 서버 접속	정보보안, VAN(value added network),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허가된 자에게만 접근허용
해킹방법에 관한 정보접근이 용이함	관련 법률 제정과 정보보호 강화
각종 응용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배포	계속적인 연구, 개발로 복제 방지
시스템 및 망 관리자의 보안책임 부족	관련 법률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
암호화 및 복호화 기법의 불완전성	지문인식, 음성인식, 홍채인식 등 시스템을 암호화하여 개선

더구나 최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저작권자의 파일에 디지털 워터마킹과 디지털저작권관리(DRM)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적으로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추세가 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정보보호, 정보보안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기업에서는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기술 또한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 하고자 한 방안이기도 하다.

Ⅲ. 저작권 침해사례

인터넷의 파급효과가 경제발전과 맞물려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지적재산의 보호가 날로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분야에 집중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분쟁 중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에서 일어난 기존의 사례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자거래진흥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2)]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매년 인터넷 파급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또는 온라인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복제 및 배포를 용이하게 할 경우 누가 하였는지 정보의 추적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상으로 배포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 간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복제행위를 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침해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복제권의 침해문제와 네트워크운영자의 책임제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사례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침해사례 4가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사례1의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와 타인 데이터베이스에의 프레임 링크에 대한 책임은 복제권의 침해문제이고 사례3은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의 책임제한에 내용이며, 사례4는 데이터베이스의 계약법적 보호를 소프트웨어 shrinkwrap license의 거래방법의 적법성에 관하여 미국판례를 인용한다. 이 판례에 관한 미국의 판결은 U.C.C.에 기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법원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으로 나뉘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UCITA를 제정하였으나 이법에 관하여는 각 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여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 있는 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2003년 5월 27일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보호 등을 신설하여 개정하였다.

---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판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의 판례), 전자거래진흥원(www.ecmc.or.kr의 주요사례)의 홈페이지 공개자료 참조.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사건개요]

① 원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이자 치과의사인 소외 박규진이 병원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설계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2.6.8. 설립한 회사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쥬얼 베이직 등을 이용하여 병·의원 종합관리프로그램인 "챠트마스타"를 개발하여 이를 계속 개량한 끝에 상품화에 성공하여 같은 해 11월경부터는 서울 등지에 소재한 병·의원에 위 "챠트마스타"를 납품하기에 이르렀다.

② 소외 최원하는 1991.8.경부터는 원고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위 "챠트마스타"의 개발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1994.10.말경 원고 회사를 사직한 다음, 같은 해 11월경부터는 경기 김포군에서 녹십자의원을 경영하던 피고가 프로그램 설계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닉스소프트사의 프로그램 개발실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챠트마스타"와 유사한 기능의 병원업무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자신이 원고 회사를 사직할 당시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온 위 "챠트마스타"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일체의 개발자료를 토대로 그 소스코드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1995.3.경 위 "챠트마스타"와 사용자화면의 구성과 색만이 다르고 대부분의 기능이 동일한 컴닥터라는 이름의 병·의원 종합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무렵 시중 병·의원 등에 위 프로그램 시가 합계 30,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③ 위 최원하는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개작 및 판매행위에 관한 직접행위자로서 피고는 위 최원하의 사용인으로서 각 원고의 위 '챠트마스타'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판결요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이 판결은 전술한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6.5.31. 선고 95가합19131 판결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결이다. 이 사건은 문제된 양 프로그램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경우에 표절 또는 무단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어려운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문제된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그 보호가 개시된다고 하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의 간단한 판시만을 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위의 사건이 2001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명백히 위법이라는 사실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다른 관점에서 밝혀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알 수 있다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주장에 의거 법 적용에 충돌이 생긴다면 중재에 의거 해결되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2. 타인 데이터베이스에의 프레임 링크에 대한 책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1. 12. 7. 판결 2000가합57067 [손해배상(기)].

인터넷상에서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프레임 링크하여 자신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본 사안에서 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하에서 사실관계와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살펴본다.

원고는 전자지도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9년 3월경 지표상의 산맥, 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들과 도로, 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들에 관한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전산화함으로서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손쉽게 원하는 지리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수치지형도"와 "서울시수치지번도"란 이름의 전자지도(이하 "이 사건 전자지도"라 한다)를 개발, 제작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9년 9월 10일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및 판매업과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넥스텔(이하 "피고 넥스텔"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전자지도와 피고 넥스텔이 개발한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 넥스텔이 개발한 전자지도 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고객 1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 넥스텔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금39,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협력업체계약정에 따른 이 사건 전자지도와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위한 광고 목적으로 피고 넥스텔에게 무상으로 위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공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넥스텔은 그 전인 1999년 3월 16일 소외 주식회사 데이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넥스텔이 소외 회사에게 전자지도와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그가 제공하는 "달마넷"이라는 이름의 불교종합정보망 이용자들에게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넥스텔이 개발한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고객 1인에게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소외 회사를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권자로 지정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피고 넥스텔이 개발한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 넥스텔은 "www.mymap.net"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링크사이트"라 한다)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원

고와 사이의 위와 같은 협력업체약정에 따른 이 사건 전자지도 및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위한 광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를 이용한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도검색서비스에 쓰이는 이 사건 전자지도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 넥스텔은 2000년 1월 19일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 등의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신세기통신(이하 "피고 신세기통신"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신세기통신이 개설한 www.itouch017.com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지도검색서비스를 링크시켜 이 사건 사이트에 개설된 피고 신세기통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고 넥스텔의 위와 같은 지도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신세기통신은 2000년 4월 1일경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보기"란을 클릭하면, 피고 넥스텔의 이 사건 링크사이트에 있는 지도검색서비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연결되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피고 넥스텔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어떠한 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 넥스텔의 위와 같은 지도검색서비스를 프레임 링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신세기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보기"란을 클릭하면 모니터 화면 테두리에는 피고 신세기통신의 컴퓨터 서버에서 전송된 피고 신세기통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이, 화면 중앙에는 피고 넥스텔의 컴퓨터 서버에서 전송된 피고 넥스텔의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만이 각각 나타나게 됨으로써 피고 신세기통신은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

지 아니하고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 사건 사이트에 링크된 피고 넥스텔의 컴퓨터 서버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지도검색서비스를 전송 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지도검색서비스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과 같은 외관과 효과를 얻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법원은 우선 원고의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지표상의 자연적 현상들과 인문적 현상 등에 관한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개발, 제작한 이 사건 전자지도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 넥스텔의 채무불이행행위에 대하여 "피고 넥스텔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은 원고가 저작권을 갖는 이 사건 전자지도를 이용할 권리와 자신이 개발한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고객 1인에게만 위 전자지도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를 갖고 원고로부터 허락 받은 이용방법과 이용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전자지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위 전자지도 이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함으로서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할 권리와 위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고객 1인에게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만을 원고로부터 수요 받았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 넥스텔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사의 이 사건 전자지도 이용자 지정권을 이미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신세기통신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레임 링크하는 것을 허락하여 피고 신세기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위 전자지도를 이용한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공급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넥스텔은 이로 인하여 전자지도 등의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피고 신세기통신과 같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판매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

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또한, 피고 신세기통신의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지도검색서비스상 표시되어 있는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 넥스텔의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영리 목적으로 프레임 링크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원고의 위 전자지도의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고 신세기통신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 넥스텔의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레임 링크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이용하게 한 행위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자지도의 저작권자로서 전자지도 등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하여금 위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신세기통신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전자지도 판매수입 상실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는 전자거래기본법(제정 1999. 2. 8. 법률 제5834호)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행위책임으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2년 1월 19일 전문개정 법률 제6614호 전자거래기본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06843호)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일부 보완하여 개정되어 졌다. 결국 기술의 발전추세에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로 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기술적으로 애매모호한 사건일 경우에는 중재로 유도함이 당자자의 에너

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의 책임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DC MFla) 29 USPQ2d 1827. 12/9/1993.
1993년 12월 9일 . 93-489-Civ-J-20. 미국 플로리다 중부지방법원

[판결요지](Headnotes)
COPYRIGHTS

(1) 저작권 ; 침해 … 저작물 또는 음반배포권 … 일반론

저작권 ; 침해 … 전시권

피고는 전자게시판의 가입자들이 그곳에서 컴퓨터영상 사진들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이 있는 잡지의 사진들의 복제본을 배포할 권리 및 전시할 권리를 침해했다. 피고가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가입자들이 게시판에 저장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사진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저작권법 106조 3항의 배포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저작권법 106조 5항의 전시권은 브라운관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에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포함되지만, 컴퓨터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전자게시판 가입자에 한정되더라도, 정상적인 가족이나 친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저작권 있는 사진의 전시는 공연성이 있다.

(2) 저작권 ; 침해 … 공정이용 … 공정이용의 요소들

유료전자게시판에서 가입자들이 컴퓨터영상을 전송받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사진의 공정이용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용이 전적으로

상업적이고, 저작물의 성격이 사실적 저작물이라기 보다는 오락용이며,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은 원고의 출판에 있어 성공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피고와 같은 형태의 행위가 확산되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 원고 수입의 상당부분을 잠식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상업적 이용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TRADEMARKS AND UNFAIR TRADE PRACTICES

(3) 상표의 유형 … 연상적(Suggestive) … 특별 현저한 상표

월간 잡지와 잡지기사를 위해 등록된 표장인 "Playboy"와 "Playmate"는 그들이 상품의 특성을 암시해주는 연상적인 상표이다. 동 표장들은 잘 알려져 있고, 원고의 상품과 널리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의 보호를 받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한 식별력을 취득한 바 있다.

(4) 침해: 상표간 충돌 … 혼동의 가능성 … 그에 관한 증거 … 일반론

원고의 상표의 사용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아무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의 또는 고의는 상표권침해의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의 유사성에 의하여 야기된 혼동의 가능성이 경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5) 침해; 상표간 충돌…혼동의 가능성…특별 현저한 상표…혼동

침해; 상표간 충돌…혼동의 가능성…상품 및 서비스와의 관련성…유사성 피고가 원고잡지의 사진들에서 복제한 컴퓨터 영상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전자게시판에 "Playboy"와 "Playmate" 표장을 사용한 것은 그 사진들의 출처나 후원관계에 혼동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당해 표장은 연상적 상표로서 가장 강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상표이고, 피고는 원고가 등록한 표장을 실제로 동일한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 침해 ; 상표간 충돌 … 사칭통용(passing off)

피고가 원고잡지의 사진들에서 복제한 컴퓨터 영상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전자게시판에서 "Playboy"와 "Playmate"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 1125조 (a)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피고의 서비스를 허락한 것 같은 그릇된 인상을 주고, 그 결과 사진의 출처를 잘못 인식하게 한다. 원고의 상표를 제거한 사진위에 피고가 자체광고와 전화번호를 입력한 것은 "역 사칭통용(reverse passing off)"을 구성한다. 왜냐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로부터 신용을 얻고자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얻고 있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잠식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사진들이 원본과 달리 여겨질 수 있는 정도로의 수정작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경위와 판결이유

Playboy Enterprises사가 George Frena d/b/a Techs Warehouse BBS Systems and Consulting과 Mark Dyes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불공정경쟁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일부 약식재판을 신청하였고, 이는 인용되었다.

이 사건은 Sega Enterprises Ltd. v. Maphia <주:857 F.Supp. 679 (N.D.Cal. 1994)>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으로 원고 Playboy는 누드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Playboy는 잡지 등을 판매하고 그에 관한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해 정상조의 평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Frena는 전자게시판운영자로서 동 게시판의 가입자들이 원고 Playboy의 누드사진과 같은 음란사진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저작권침해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전자게시판운영자는 가입자들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연방지방법원은 전자게시판운영자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국내사례로는 전술한 KBS의 저작권침해책임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이 있다.

이 사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게시판 운영자를 비롯한 PC통신망사

업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PC통신망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 통신망사업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른 사례를 참고로 보면, 우선 Cubby, Inc. v. Compuserve, Inc. <각주:776 F. Supp. 135 (S.D.N.Y.)>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Compuserve라고 하는 통신망에 "Journalism Forum"이라는 동호회창구에서 특정 전자잡지를 출판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설명이 등장한 경우에, 통신망사업자 Compuserve는 출판사가 아니라 단순한 배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통신망 속의 데이터베이스가 명예훼손적인 내용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그러한 내용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 되었다. 이에 반하여,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각주: 23 Media L.Rep. (BNA) 1794 (N.Y.Sup.Ct. May 25, 1995): 이 사건은 연방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뉴욕주법원의 판결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사건에서는, Prodigy가 충분한 수정·편집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되었다. 이 사건에서 Prodigy의 통신망에는 증권과 사채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Money Talk"이라는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느날 동 게시판에 원고회사의 범죄혐의가 곧 밝혀질 것이고 생계를 위해서 거짓말만을 하는 브로커들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비방문이 게시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Prodigy가 게시판의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일반공중에 홍보한 바 있고 특히 그러한 통제용 프로그램(software screening program)을 통하여 실제로 편집권을 행사해왔으며 각 게시판책임자(board leaders)로 하여금 내부규정(guidelines: 게시판 내용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Prodigy는 출판업자에 유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관련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오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사건 발생 후 일어나거나 또는 인터넷과 같이 급속히 발달되고 있는 추세에 미리 선점해 있지 못하

고 뒤쫓아가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원활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를 미리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중재법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4. 데이터베이스의 계약법적 보호

ProCD Inc. v. Zeidenberg
(항소심7) 39USPQ2d 1161 6/20/1996
1996년 6월 20일 판결. No 96-1139. 연방 제7순회항소법원.

[판결요지](Headnotes)
저작권
컴퓨터 상품의 보호 가능성 … 일반론
창작물에 대한 비저작권적 보호 … 일반론
피고 구매자는 비록 상품의 외면에 계약의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원고의 CD-ROM제품의 구매에 수반하는 "shrinkwrap license"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미국 통일상법전에 의하면, 매도인은 일정한 행동에 의하여 승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러한 승낙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설정해 놓은 그러한 승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승낙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매수인이 계약서를 읽을 기회를 가진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서 승낙하는 것으로 설정한 계약을 청약하였고, 피고는 당해 소프트웨어와 계약조건(shrinkwrap license)을 검사·인지하고, 반송의 절차를 밟지 않고 오히려 당해 소프트웨어를 실행·이용함으로써 당해 계약에 승낙한 것이다.

(1) 저작권의 요건 … 연방법의 선점권
17 USC 301(a)는 연방저작권법이 상이한 내용의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선점적 효력(preemption)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록 원고의 소

프트웨어와 데이터가 "확실한 표현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서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CD-ROM판매에 수반된 "shrinkwrap license"를 강제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의 일반적인 영역에 속하는 어떠한 배타적인 권리와도 동등한" 권리들을 우선시키는 301(a)조는 저작자에 대한 제3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법문에 의해 창설된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계약은 계약당사자만을 구속할 뿐이고, 배타적 권리를 창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창설된 계약상의 권리는 연방저작권법 301(a)조에 의해 우선되는 배타적 권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법은 연방저작권법에 의하여 선점(preemption)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사건경위와 판결이유

미국 서부 위스콘신 지방법원의 항소심 : 38USPQ2d 1513

ProCD사가 Matthew Zeidenberg와 Silken Mountain Web Service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license위반, 위스콘신 컴퓨터범죄법 위반, 횡령, 부정경쟁의 건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약식재판의 결과 피고가 승소하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다.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이 사건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하여 중요한 연구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정상조의 평석을 인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원고가 미국전체의 전화번호가입자의 전화번호, 성명, 주소, 우편번호, 산업코드(census industrial code) 등을 모두 입력하여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CD-ROM으로 제작한 SelectPhone이라고 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는데, Matthew Zeidenberg라고 하는 위스콘신대학 학생이 동 CD-ROM을 구입하여 동 제품 속에 입력된 정보를 모두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download)하고 당해 정보를 Internet을 통해서 제공한 경우에, 전호번호 관련 정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것이다. 본래,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로 보아 왔고 대부분의 전화번호부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로서 보호되어 오다가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3] 사건을 계기로 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은 하급심에서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창작성 요건 특히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즉, 전화번호부의 저작물성에 관해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상당한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전화번호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했는데,[4] 미국연방대법원은 전호번호의 수집에 노력과 자본을 투입한 것만으로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집한 전화번호의 선택에 창작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알파베트 순이라고 하는 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배열한 전화번호부는 창작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호번호부에 저작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던 것이다. ProCD사건은 바로 이러한 대법원판례를 따라서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해석에도 아주 유사한 결론을 시사해주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편집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Feist사건이나 ProCD사건에서와 마찬가지의 저작권법적 보호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ProCD사건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적 보호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소위 "shrinkwrap license"의 효력을 인정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간접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러한 shrinkwrap license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이 사건은 담당한 연방지방법원은 그 조건들이 상품의 외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구매자의 승낙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

3) 112 L. Ed. 2d 358, 1991.
4) Ringer, Copyright in the 1980s, 23 Bull. Copyright Soc'y 299, 305, 1976.

로 하여 당해 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shrinkwrap license에 관한 논리구성을 파기하면서, Zeidenberg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동의한 조건의 하나는, 그 거래가 shrinkwrap license에 종속한다는 조건인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 즉, 연방항소법원은 당해 CD-ROM 제품 외면에 예고를 하고, shrinkwrap 내부에 구체적인 조건을 상세히 기재해 놓고, 당해 이용허락조건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에 환불과 소프트웨어를 반품할 권리들을 설정하는 것은 개발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치 있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참고로 데이터베이스의 무단복제 또는 무단이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또는 부당이득으로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례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The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v. Sports Team Analysis and Tracking Systems, Inc. (STATS) [5] 사건을 들 수 있다. STATS 사건에서 원고 미국농구협회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BA)는 자신이 주최하는 농구게임이나 농구게임결과(승패와 점수) 그리고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에 대해서 창작적인 선택·배열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연방지방법원의 프레스카 판사(Judge Preska)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원리를 원용하면서 NBA는 농구게임에 관한 실시간 정보("real-time" information)를 공급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따라서 NBA의 허락 없이 그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디지털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연구한 박영길(2000)의 논문[6]를 인용하여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라는 문제는 학문적인 쟁점으로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미연방대법원이 1991년에 Feist v. Rural Telephone 사건[7]과 EU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지침초안[8]

5) 1996 Westlaw 435031, S.D.N.Y. July 22, 1996.

6) 박영길, "디지털환경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상)," 저작권심의위원회, 계간 저작권, 52호, 2000.12.

7) Feist Publication, Inc. v. Rural Tel. Serv. Co., 499 U. S. 340, 363, 1991.

이 작성된 이후에 미의회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반응을 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미연방대법원은 Feist사건 판결에서 Sweat Copyright를 일소한 이후, 정보편집물, 특히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수단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내용이 없는(thin)"저작권보호수단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은 편집자가 공유정보를 만든 창작적 공헌(the original contribution) 만을 보호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로 인하여 미국 데이터베이스산업은 미국의 보호능력의 부족 때문에 유럽의 데이터베이스산업과의 경쟁부분에 있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다국간 조약의 협상을 위하여 WIPO에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를 제출하였다.[9]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계속하여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자들은[10] 데이터베이스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법이 그와 같은 비율로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소유권자들은 더 나아가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데 투자한 시간, 비용 과 노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널리 보급시킬 수 있는 값싼 기술들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더 많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1]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면 소수의 개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이 개발하거나 개선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질은 더욱 저하될 것이다. 만약 그 질이 저하된다면, 미국 경제와 과학의 양쪽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

8) Council Directive 96/9/EC, 1996 O. J. (L 77/20) 20(이하 "지침"이라 한다).
9) W. Matthew Wayman. Comment : International Database Protection : A Multilateral Treaty Solution to the United States' Database Dilemma, 37 Santa Clara L. Rev. 427, 1997.
10) "데이터베이스 소유권자(database owner)"란 본래적이거나 법적으로 당해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법적인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자 혹은 그 이후의 소유권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창작적 편집을 할 수 있다. Terry M. Sanks, supra note 10, at 993, note 13.
11) U.S. Copyright Office, Report on Legal Protection for Databases, A Report of Register of Copyrights, at 67, 1997.

에 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력한 새로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관하여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번성하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법적, 계약상의 그리고 과학 기술의 보호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12] 이와 같은 견해는 주로 과학자 단체(scientific community)의 견해로서 새로운 입법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추구하여온 바, 즉 데이터에 대한 완전하고 공개적인 접근의 정책과 충돌할런지도 모른 다는 것이다.[13]

미연방대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가지 판례, 즉 Feist 사건과 ProCD사건은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즉, 1991년 미연방대법원은 많은 법원들과 데이터베이스개발업자들이 의지해오던 "the sweat of the brow theory"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줄어듬에 따라, 과학기술산업은 우선적인 방어수단으로서 "shrinkwrap license"를 채택함으로써 계약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어떤 법원들은 shrinkwrap license를 계약법과 연방법 우선적용(federal preemption laws)의 문제로서 시행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1996년 제7순회법원 (the Seventh Circuit)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의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s)를 보장하였던 shrinkwrap license는 계약법하에서도 시행할 수 있고,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측면을 이용한 사건으로서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법률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인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 제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관련 사건은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다시 강조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사건 발생 후 또는 소비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개정해 가는 상황을 보여 주

12) U.S. Copyright Report, supra note 22, at 68.
13) Terry M. Sanks, supra note 10. at 993.

고 있다.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사건해결에 시간이 걸리므로 여기에 중재법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당사자의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법에 없는 조항은 일부개정을 통해 신속히 분쟁의 해결에 대응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Ⅳ. 분쟁해결방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분쟁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14]

1. 저작권보호

현대의 정보통신시대에서는 저작권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IT관련 저작권, 지적재산권보호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개정과 산재된 법률을 통합해 나간다면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보호는 정보화발전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한다. 사용자로서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유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해 보통사람들은 특허, 저작권 그리고 상표에 대해 아주 일반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 이에 관련된 법적, 경제적, 그리고 통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더구나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는 사용자나 운영자들

14) IT분야와 전자상거래 관련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해 연구한 장병윤(2003)의 연구를 일부 인용하여 기술함. 장병윤,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논문, 건국대학교, 2003. 2.

이 지적재산권을 악용하여 복제, 배포한다면 많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사례와 분쟁이 생길 것이다. 최근에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통합되어 운용된 고속의 컴퓨터와 통신망 운영은 저작자, 사용자가 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쇄업자, 출판업자, 전시업자, 그리고 배포업자가 될 수도 있게 하였다. 이는 이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를 생각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된다. 사용자들은 저작권법, 지적재산권법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겉보기에 해롭지 않을 것 같은 컴퓨터 통신망에서의 거래가 어떻게 해서 지적소유권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한다. 일반인들도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시장을 확장시키며 정보거래의 활성화가 소프트웨어 즉 정보통신 또는 콘텐츠의 발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야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인터넷에서는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의 복제와 배포가 너무나 쉽고 빠르다. 단지 한번의 불법 복제가 저작물의 합법적인 복제물의 시장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일 개인들이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은 사적 복제를 한다면, 이윤을 기대하는 프로그램의 저작자나 판매용 녹음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클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권보호방안으로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장치에 앞서 우선 사용자의 의식이 중요하다. 저작자의 지적재산권보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이 관련되면 보호의 어려움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는 기술적, 법률적, 비즈니스 측면을 병행하여 접근하여야 될 것이다.

장병윤(2003)의 연구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생각 할 수 있다. 첫째는 저작권 보호기술이고, 둘째는 법률적 기반 구축이다. 이 것들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첫번째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은 인터넷의 활성화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저작권보호기술 중 저작권 관리의 개념 및 디지털 저작권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디지털 콘텐츠의 유일 식별 체계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대표적인 보호기술이다.

DRM은 프로그램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 및 관리내용을 해당 콘텐츠에 표현함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사용 금지 및 거래 조건의 다양성을 꾀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과는 달리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아날로그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흥정과 거래 조건들을 디지털 시장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세부 거래조건은 물론 소프트웨어 등 부분적인 정보 콘텐츠까지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DRM은 프로그램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전 유통과정에서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저작권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기를 정의하는, 즉 콘텐츠의 사용 규칙을 정의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정의대로 보호되도록 제어하는 일련의 기술들이 필요하다. 또한 콘텐츠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측정하여 그 정보를 근거로 과금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식별자 체계로 DOI가 제공되고 있으며 저작권 규칙 기술언어로 XrML이 제정되어 MPEC7, MPEC21 등과 함께 최종 표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사용규칙의 정의가 표준화된다면 사용규칙을 작성하는 도구 및 콘텐츠 응용 시스템의 상호 호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툴을 개발하려는 AAP(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의 노력으로부터 발전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과학기술 관련 학술잡지, 출판사, 전자저널형태로 유통시키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의 식별체계로서 ISBN이나 ISSN 등이 기존의 식별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며, 콘텐츠의 고유한 식별시스템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1997년 미국 출판협회는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고유한 식별체계의 개발을 모색하던 중 URN(Uniform Resource Names)체계를 따르는 고유식별 시스템으로서 DOI를 개발하게 되었다.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하려는 객체가 무엇인지를 혼동함이 없이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DOI는 URN체계의 한 사례로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고유한 식별기호를 부여하고 이를 URL로 변환하여 인터넷상의 해당 정보의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이다. DOI는 URN 해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 DOI 핸들 시스템에 의해 DOI를 URL로 변환시킴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DOI를 가지고 콘텐츠의 해당위치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OI는 지적 콘텐츠의 모든 형태에 대해 폭넓은 응용성을 갖고 있고 비디오, 파일, 책, 기사 같은 관련 자료의 모든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원문 제공, 지불 문제, 라이센스 같은 정해진 일상적인 트랜잭션들을 처리하는 자동화된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두번째인 법률적 기반 구축에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즉 가정내 통신시설 확충, 모바일 통신서비스, 디지털 방송서비스, 정보가전과 홈네트워킹 보급 등 확장이 개인생활의 정보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시 법·제도적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현재의 문제점에서 예견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법률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확대에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 네트워크운영자의 책임

네트워크운영자는 프로그램배포, 공지, 관리 등 인터넷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자는 사용자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연결하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자와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책임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사용자의 책임은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그룹이나 타인의 홈페이지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침해물을 올리는 사람인 제공자, 전자우편을 통하여 침해물을 전달하는 사람인 전달자 또는 침해물이 있는 뉴스그룹이나 타인의 홈페이지와 자신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사람인 촉진자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책임기준도 달라진다.[15] 이들 침해자 중에서 촉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므로 네트워크 운영자와 같이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직접적으로 저작물, 정보 등의 내용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인의 내용물이나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하여 올려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 의해 올려진 내용물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는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의 공간을 제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된다.[16]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을 인용한 장병윤의 연구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17]

1) 미국

미국의 판례와 저작권법은 직접침해책임·기여책임 그리고 대위책임이라는 책임을 각각 달리 다루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와 관련하여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과 달리 면책하거나 또는 보다 높은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8]

---

15) Waldenberger, "Zur zivil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für Urherberrechts-verletzungenim Internet", ZUM 1997, S.180-181.

16) 현대호,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리와 그 전망," 지식재산 21, 1999. 7, pp28-29 참조.

17) 장병윤, 전게논문, 2003, pp77-80.

18)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즉 첫째,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에 있은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를 감사하거나 시사할 수 없다, 둘째, 서비스

Lehman보고서는 침해에 대한 책임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미국의 현행법 또는 저작권의 원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고, 저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았다.[19] 또한 Lehman 보고서는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현재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입자들에게 저작물을 올려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전자출판자로 행동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운영자는 다른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단일 규범을 마련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만일 네트워크 운영자가 전화국처럼 단지 전송만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전달자와 같은 지위에 있고 따라서 시스템을 누가 그리고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통제할 수 없다면 면책을 주장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20]

그러나 미국 디지털저작권법안(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H.R.2281): DMCA)은 네트워크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디지털 저작권법안 제512조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서

제공자가 자신의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검사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침해물을 항상 가려 낼 수 없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통신과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저해될 것이다. 넷째, 침해책임에 노출되면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사업에서 떠나게 될것이고, 결국 국가정보기반을 실패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섯째, 법은 가입자들이 행한 행동에 대하여 가입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이다(Lehman A.,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5).

19)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즉 첫째, 서비스 제공자만이 배포자의 책임을지는 것은 아니다. 서점·음식점·소프트웨어 판매상 등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이러한 손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종의 비용으로 여겨지게 된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정보기반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만이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섯째, 침해로 인한 책임이 컴퓨터 전자게시판이 주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Lehman A.,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5).

20) Lehman A.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5 (http://www.law.vill.edu/chron/articles/nii/nii.html).

비스를 4개의 영역, 즉 단순한 통신(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 일시적 저장(system caching),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과 링크(information location tools)로 나누고 있다. 단순한 통신과 일시적 저장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한적으로 금전적 배상책임을 허용하고 있다.[21]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네트워크 운영자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즉 ① 침해물 내지는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알지 못했거나 주위 상황에 비추어 알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안 경우에 즉시 침해물의 제거 내지는 침해행위를 차단한 경우, ② 네트워크 운영자가 이러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 때에는 침해행위로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③ 침해행위에 대한 통지를 받고 즉시 침해물의 제거 내지는 침해행위를 차단한 경우에 책임이 배제 된다. 링크의 경우에는 ① 침해물 또는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주위 상황에 비추어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물 내지는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③ 침해에 대한 통지를 받고 즉시 침해물의 제거 내지는 침해행위의 차단을 한 경우에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고 있다.[22] 이들 4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침해물과 침해행위의 부작위 및 제거청구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기준이라는 용어 보다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으로 저작권법(일부개정 2003.5.27 법률 제06881호)에 명시하여 2003년 7월 1일

21) DMCA, Sec. 512. (c) 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 (1) IN GENERAL

22) DMCA, Sec. 512. (d) INFORMATION LOCATION TOOLS

부터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권리, 기간 등은 저작권법 조항 제73조의 2부터 제73조의 9까지 신설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 제77조와 제77조의 2를 신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신설된 조항에서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을 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복제, 전송 등에 관한 내용과 책임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지만 예를 들면 네트워크 운영자가 웹마스터인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볼 것인가 서버관리자 또는 운영자로 여겨 질 것인가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네트워크운영자를 분리하여 볼 것인가 그리고 책임한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판단해야 되는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2003년 5월 27일 저작권법 개정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신설조항에 명시하고 있다는 사항이 중요하다.

3. 저작권침해에 대한 보호와 분쟁해결방법

저작권의 침해를 보호하고 분쟁발생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논거 하고자 한다. 우선 용어를 정리하면 지적재산권침해란 지적재산권 권리자 이외에 제3자가 권리보호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위법하게 실시하는 행위라고 한다. 그 행위 형태에 따라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로 구분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방법 중 하나는 이미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간의 협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또는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중재 및 알선에 의한 협상 등의 방법이 있고 그밖에 통상차원의 해결방법이 있다. 특히 상인이 사이버 공간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하는데[23] 최근에는

23) 이상정,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특집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이러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결합 내지 부족한 점을 제거하거나 보충함으로서 개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는 소프트웨어의 보호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것 또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법 중 하나이지만,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프로그램 표현에 한정되므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24]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정보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고도의 저작권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보호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프로그램을 미리 등록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은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인터넷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나 대량의 정보에 매우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접근을 가능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정보의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25] 정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인터넷은 인간의 창의력의 모든 범주와 관련된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논의의 주제를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에 관련된 기술을 내포한 전반에 대하여 이에 관한 특허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콘텐츠 등은 특허능력 허용범위를 놓고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새로운 분야이면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쟁해결에 중요하다. 인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

연구," 제33권2호, 경희법학, 경희대학교, 1990. 12, pp54-82.

24)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의 특허청의 운용지침과 해석 등에 의하면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에 의한 특허는 인정되지 않으나 수학적 알고리즘이 다른 요소와 결합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특허성이 인정되고 있다.

25) Ian C. Ballon, at 1264; Esther H. Lim, "Patent and the Internet,"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 Joint Intellectual Property Symposium, COEX, 1998. 4. 29, pp9-44.

적재산권법 중 저작권은 사상의 표현을 보호하는 반면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idea) 그 자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창작자는 경제적 동기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저작권제도 보다는 특허권 제도에 의한 강력한 보호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특허의 독점배타성은 지식확산이나 이를 통한 창조의 측면에서는 역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내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권 보호강도에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26]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작권보호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보면,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고자 중재법(2002.1.26. 법률 제6626호)의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제39조)이 2002년 1월 26일 일부개정 되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분쟁을 예방하고자 2003년 5월 27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저작자의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 조항을 신설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장병윤(2002)의 디지털저작권관리 프래즌테이션 자료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다음 <그림 4-1>과 같이 사용자가 인증을 거쳐 엑서스하게 되고 정보보안 구축과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등 콘텐츠에 워터마크기술을 적용하여 저작권을 보호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은 실제로 기업에서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26) Jeffrey G. Raphelson, at 1204; 폴 로머, 소프트혁명 - SW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 매일경제, 1999. 4. 15., p9, 지식경영 국제컴퍼런스 지상중계 내용 참조.

<그림 4-1> 저작권보호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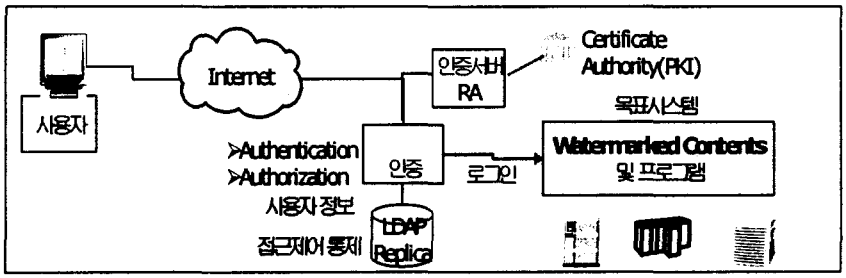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 입법론을 제기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의 저작권침해사례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와 타인 데이터베이스에의 프레임 링크에 대한 책임은 복제권침해의 문제,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사례는 운영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사례는 계약법적 보호의 문제를 분석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거래방식이 전통적인 계약법이론으로서는 그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유효성이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거래방식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의거 행하고 있지만 재판상 문제로 제기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법 제도의 미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문제를 저작권법이 2003년 5월 27일 개정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 하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관련법을 기술 추이에 맞게 보완하여 나아가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IT관련 기술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정보관련 데

이터의 무단복제와 배포가 이루어지면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문제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정보보안, 정보보호, 저작권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전자거래기본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적 사항들이 IT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나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즉 콘텐츠의 저작권침해, 해킹, 프로그램 유출 등에 대처하기 힘들다. 이러한 발생은 분쟁의 요인이 되므로 저작권침해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분쟁유형 또한 다양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문제점과 분쟁요인, 침해사례 등에 관하여 분석 파악하고,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방안과 네트워크운영자의 책임 등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첫번째,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이 기술발전추이에 상응하도록 제정, 개정되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 제정, 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국내 중재법이 이러한 문제를 상호 수용되도록 변화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분쟁 발생시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세번째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사용자 또는 기업들이 무형의 저작권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고취가 향상되어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례를 분쟁부터 조정까지의 케이스를 분석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기업의 비밀과 법률적 제도로 인하여 자세하게 열거 할 수 없는 것이 한계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경제적 가치, 기술적 가치를 평가하여 이용하는 방법과 이를 통한 무형의 저작권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 방법을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의한 중요한 의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보호에 관한 문제를 법적, 기술적, 비즈니스 측면으로 병행 접근하여 연구 분석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는 앞으로 각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법학, 경영학에 의거 실증분석 연구가 병행하도록 하는 제안으로 여겨지게 하는 데에 있다.

ABSTRACT

A Study on Infringement Cases of Software Copyright and the Dispute Settlement

Byung Youn Chang

Information technology(IT) is changing rapidly based on growth of internet and computer businesses. Therefore, computer programs and softwares are distributed to computer users promptly for their productivity increase and efficient work. So, in the distribution, the softwares will be copied or released through network or other method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program owners. In that case, copyright dispute is incurred and various issues are come out due to infringement of the software copyrigh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infringement cases of the software copyright and how to settle the dispute which is related with software program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research consisted of 5 chapters. At chapter 1 introduction, it mentioned necessity of this study, purpose and how to research this study, and at chapter 2 dispute factors indicated and summarized for technical resolution. At chapter 3, infringement cases of software copyright analyzed and studied upon intellectual property(IP) related laws. And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discussed and suggested to chapter 4 for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lso, it emphasized importance of arbitration to resolve the issues timely and avoid time and economical consumption. Of course, arbitration law has to be matched with the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effective

settlement. At chapter 5 conclusion, it summarized this research and suggested further research for empirical test of economic value of the software copyright upon the aspect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1) IP related laws have to be enacted or revised to meet technical changes for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on time. The enactment or the revision of law takes a long time, therefore, to deal the dispute effectively, 2) arbitration law has to be utilized efficiently in order to resolve issues and settle the dispute promptly. It is suggested the dispute settlement through arbitration to save time and economic matters for legislation, and to harmony with the technology trends. 3) Recogni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to be improved by users and enterprises for development of software related industr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onclusion,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in the field of IT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laws. The development is for areas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so research and practices are to be combined with the areas so that it could resolve the dispute settlement and IP protection effectively.

Key Words: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Software, Dispute Settlement, Infringement, Internet

참 고 문 헌

1. 國內文獻

박영길, "디지털환경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상)," 저작권심의위원회, 계간 저작권, 52호, 2000.12.

송영식 · 이상정, 지적재산법(신4정판), 세창출판사, 2000.

이상정,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특집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33권 2호, 경희대학교, 1990.12.

장병윤,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분쟁사례 연구," 중재학회지, 제11권, 2001., 디지털저작권관리 프래즌테이션 자료, 2002.,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논문, 건국대학교, 2003.2.,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2권 2호, 2003.

정상조,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한국전산원, 2002 국가정보화백서, 2002.

현대호,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리와 그 전망," 지식재산21, 1999. 7.

상법, 저작권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자서명법, 중재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2. 西洋文獻

Ballon, Ian C., at 1264; Esther H. Lim, "Patent and the Internet,"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 Joint Intellectual Property Symposium, COEX, 1998. 4. 29, pp9-44. Council Directive 96/9/EC, 1996 O. J. (L 77/20) 20.

DMCA, U.S.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H.R.2281), U.S.A.

Feist Publication, Inc. v. Rural Tel. Serv. Co., 499 U. S. 340, 363, 1991.

Lehman A.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5 (http://www.law.vill.edu/chron/articles/nii/nii.html)

Ringer, Copyright in the 1980s, 23 Bull. Copyright Soc'y 299, 305, 1976.

Sanks, Terry M., supra note 10, at 993, note13.

Spector, Phillip L.,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ITAL 1996 International Symposium, 1996. pp149-150.

U.S. Copyright Office, Report on Legal Protection for Databases, A Report of Register of Copyrights, at 67, 1997.

U.S. Copyright Report, supra note 22, at 68.

Waldenberger, "Zur zivil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für Urherberrechts-verletzungenim Internet", ZUM, 1997, S.180-181.

Wayman, W. Matthew Comment: International Database Protection: A Multilateral Treaty Solution to the United States' Database Dilemma, 37 Santa Clara L. Rev. 427, 1997.

112 L. Ed. 2d 358, 1991.

1996 Westlaw 435031, S.D.N.Y. July 22, 1996.

3. 其他資料

매일경제, 지식경영 국제컴퍼런스 지상중계 내용, 1999. 4. 15, p9.

http://www.copyright.or.kr/

http://www.ecmc.or.kr/

http://www.pdmc.or.kr/